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44회 임시회

# 검 토 보 고 서

2020. 10. 26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**행정건설위원회**  
(전문위원 유준상)

#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##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### 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20. 10. 12.
- 회부일 : 2020. 10. 13. (의안번호 : 20 - 132)

### 2. 제안이유

-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원로의 지식과 경험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구성 변경 및 위원수 확대  
(안 제3조제1항~제2항, 제4항~제5항)
-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한 조항 추가(안 제10조제2항~제3항)
- 마포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내용 정비(안 제11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 2(자문기관의 설치 등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, 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, 제80조의3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 미래성장자문단의 분야별 세분화 및 전문 인력 확충으로 다양한 전문가 및 지역원로의 지식과 경험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주요내용으로는  
안 제3조제1항~제2항, 제4항~제5항에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구성 변경 및 위원수 확대하는 내용임.
- 안 제10조제2항~제3항에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한 조항 추가하는 내용임.
- 안 제11조에 마포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내용 정비 하는 것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조례안은 자문단을 정책 분야별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,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적극 대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포구의 정책결정 및 구정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건의·자문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의 구성 변경 및 인원 확충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다만, 현재 자문단의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자문단의 자문으로 변화가 일어난 정책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, 자문단 위원 수의 확대는 오히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본 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을 통한 자문단 구성이 요구됨.

○ 또한, 경비성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분야별 구성인원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여성의 사회적 진출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여성 자문단 인원 비율 구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